##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72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박용갑・박 정・고민정

한준호 · 장종태 · 정을호

추미애 · 황정아 · 서미화

한민수 · 강유정 · 문진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 환기도, 통풍도 되지 않는쪽방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더운 바람이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난방기 사 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9조제4 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혹한 등의 재 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재난 발생 해당 월의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면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u>수 있다.</u>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
	하는 경우 재난 발생 해당 월
	의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
	<u>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u>
	<u>하여야 한다.</u>
	③ 정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
	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4의2.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u>

	금 감면 지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